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063
----------	-------

발의연월일 : 2026. 1. 15.

발 의 자 : 윤건영 · 채현일 · 이상식
차지호 · 권칠승 · 김성희
김한규 · 고민정 · 최혁진
윤종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관 또는 공관의 대체시설에 재외투표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관할구역의 재외국민수가 3만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공관 또는 공관의 대체시설 외의 시설·병영 등에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운영하되 추가되는 재외투표소의 총수는 3개소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그런데 관할구역에 재외국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재외투표소를 3개까지 추가로 설치하더라도 재외국민의 투표 수요를 모두 충족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어, 현재의 규정으로는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외투표소의 추가 설치 요건을 재외국민수 3만명에서 2만명으로 완화하고 추가되는 재외투표소를 최대 3개소에서 5개소로 늘림으로써, 재외국민이 더욱 용이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하여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안 제218조의17제2항).

법률 제 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8조의1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3만명”을 각각 “2만명”으로, “3개소”를 “5개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3만명”을 “2만명”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